

신창동 29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신창동 29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17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행위허가 제한 대상지

- 신창동 29-1번지 일대 / 16,024.5 m^2

2. 제한 근거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

3. 제한 사유

-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비경제적인 건축 및 외부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함

4. 제한 기간

- 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)

5. 행위허가 제한 내용

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-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
-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
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
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 부분 분할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
- 토지의 분할

6. 제한 적용 예외

-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7. 관련도서

-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

8. 기타사항

-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(☎02-2199-7465)로 문의하시기 바람

□ 지형도면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